

#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서

인지  
5,000원 × 사건본인 수

청 구 인: (연락 가능한 전화번호: )  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  
주소:  
사건본인과의 관계:

사건본인:  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:  
주소:  
등록기준지:  
(외국인의 경우 국적 기재)

## 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(주민등록번호: - , 주  
소: )을(를) 선임한다.  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  
(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.)

※ 청구취지에 기재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상세 기재란입니다.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임의후견<br>감독인<br>후보자 | 성명                  | (연락 가능한 전화번호: ) |
|  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<br>(외국인등록번호)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직업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사건본인과의 관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### 첨 부 서 류

1. 사전현황설명서/재산목록 각 1부
2. 임의후견인에 관한 사항,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각 1부
3. 후견계약 공정증서 1부
4.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 각 1부  
(인감날인,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)
5.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표등(초)본 각 1통
6. 청구인, 임의후견인,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의 주민등록표등(초)본 각 1통
7. 청구인 및 후견감독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1통  
[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제적등본(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) 등]
8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1통  
※ 발급기관: 전국 가정법원(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) 및 지원
9. 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전부) 각 1통
10.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각 1통
11. 기타(소명자료) 각 1부

20 . . .

청구인 (서명 또는 날인)

법원 귀중

◇ 유의사항 ◇

1.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,000원×(사건본인 수)를 납부 후 전자납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송달료는 당사자(청구인, 사건본인,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) 1인당 10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시고 납부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3.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.
4.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 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5. 청구인이 청구한 감독인 후보자가 반드시 후견감독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
6.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첨부서류로 여권사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여권사본,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국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청구원인 작성 예시

1. 사건본인은 20 . . . . 사건본인을 위임인, ○○○(주민등록번호 - , 주소 )을(를) 수입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공정증서(법무법인 ○○작성, 20 년 제 호)에 의하여 체결하고 20 . . . . 이를登記하였습니다.
2. 그 후 사건본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.
3. 이에 ○○○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의 요양 간호,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으로서의 사무를 수행 하 도록 하고자 하여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.
4. 청구인은 임의후견감독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을 추천합니다.

# 사전현황설명서

|   |   |
|---|---|
| <b>1.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가. 성년후견·특정후견·한정후견을 받고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나.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다.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라. 사건본인의 재산 상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구체적인 재산 상황은 별지 재산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.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바.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b>2. 임의후견감독인선임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(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)</b> |   |
|   |   |
| <b>3.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</b>       |   |
| 가.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나. 동의자(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첨부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다. 부동의자   |   |

※ 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

추정 선순위 상속인이란, 사건본인 사망 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4조에 따라 상속순위에서 우선적 지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말합니다.

※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선순위 상속인

- 사건본인이 기혼일 경우: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
-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: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사건본인의 직계존속
- 사건본인이 미혼일 경우: 사건본인의 직계존속
-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: 사건본인의 형제자매
- 사건본인이 기혼이고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경우: 사건본인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직계비속(대습상속인)
-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기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: 사건본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(대습상속인)
- 사건본인이 미혼이고 직계존속과 미혼의 형제자매 모두 사망한 경우: 사건본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

# 재 산 목 록

(뒷장의 작성 예시를 참조하십시오.)

## ▣ 적극재산

□ 부동산: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

| 부동산의 종류   | 소재지 | 시가(원)<br>( <input type="checkbox"/> 실거래가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지가) |
|---|-----|--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물 |   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물 |     |  |

※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

※ 증빙서류: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공시지가(또는 실거래가)확인서 첨부

□ 예·적금: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

| 금융기관명 | 잔고 | 비고(계좌번호 기재) |
|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      |    |             |
|       |    |             |

□ 보험: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

| 보험회사명 | 납입금총액 | 비고(계좌번호 기재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

□ 증권 등:  아래와 같이 있음  없음

|    |  |
|----|--|
| 주식 |  |
| 펀드 |  |

□ 채권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채권 종류   | 채무자 | 채권 | 비고 (기간 등) |
|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|
| 대여금     |     |    |           |
| 보증금반환채권 |     |    |           |

□ 기타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차량                   |  |
| 유체동산<br>(귀금속, 미술품 등) |  |
| 기타<br>(현금 등)         |  |

■ 소극재산

□ 채무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     모름

| 채무 종류   | 채권자<br>(채권자명, 은행 등) | 채무액 | 비고(기간, 사유 등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|
| 담보대출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보증금반환채무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| 기타채무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|

■ 순재산 합계

|  |
|--|
|  |
|--|

▣ 수입 및 지출 내역

□ 수입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근로소득   |  |
| 임대소득   |  |
| 사업소득   |  |
| 이자수입   |  |
| 연금     | 국민연금(유족연금)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, 기초노령연금, 장애인연금 등 |
| 보험     | 개인연금보험, 산재보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보장급여 | 기초생활수급(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), 장애수당 등            |
| 기타     |  |

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  
 예: 보험금(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), 산재보험금,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

□ 지출목록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정기적 지출  |  |
| 비정기적 지출 |  |

□ 순수입액

|       |  |
|-------|--|
| 수입-지출 |  |
|-------|--|

## 임의후견인에 관한 사항

-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-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- 기타(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)
- 해당 사항 없음

※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후견인의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

##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

-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-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- 기타(민법 제937조에 의한 결격사유)
- 기타(민법 제940조의5에 의한 결격사유)
- 해당 사항 없음

※ 해당 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후견인의 결격사유(민법 제937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
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
9.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

###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(민법 제940조의5에 의한 결격사유)

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.

# 동 의 서

사건번호:

청 구 인:

사건본인:

사건본인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으로 (생년월일 . . . )을(를)  
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동의자 (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) (전화번호: )

동의자 (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) (전화번호: )

동의자 (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) (전화번호: )

붙임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각 1부

법원 귀중

## ◇ 유의사항 ◇

1. 동의자는 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2.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본인서명을 할 경우에는 같은 필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3. 동의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4. 부동의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 등으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그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 경우 법원이 직접 동의대상자에게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# 재 산 목 록(예시)

## ▣ 적극재산

□ 부동산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□ 없음

| 부동산의 종류  | 소재지               | 시가(원)<br>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거래가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시지가) |
|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토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건물 |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번지 | 223,000,000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토지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건물 | 경기도 파주시 ○○동 123번지 | 1억 원  |

※ 시가는 실거래가를 기재하고 실거래가를 모르는 경우 공시지가를 표시

※ 증빙서류: 해당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공시지가(또는 실거래가)확인서 첨부

□ 예·적금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□ 없음

| 금융기관명 | 잔고     | 비고(계좌번호 기재)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△△은행  | 100만 원 | 110-234-12354 |
| ▼▼은행  | 50만 원  | 67-59-345678  |

□ 보험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□ 없음

| 보험회사명 | 납입금총액  | 비고(계좌번호 기재)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○○생명  | 100만 원 | 110-234-12354 |
| ▲▲생명  | 20만 원  | 67-59-345678  |

□ 증권 등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□ 없음

|    |  |
|----|--|
| 주식 | ○○전자, 평가총액: 보유량(2,000주) × 평가액(1,000원)=200만 원 |
| 펀드 | 차이나펀드, 계좌번호: 100-236-1658756, 평가총액: 500만 원   |

□ 채권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채권 종류   | 채무자     | 채권액      | 비고(기간 등)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대여금     | 김갑동     | 200만 원   | (대여일: 2014. 3월 ) |
| 보증금반환채권 | 세입자 송을순 | 5,000만 원 |                  |

□ 기타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차량                   | 등록번호: 57노0000, 차종: 소나타(20 년식) 시가: 500만 원 |
| 유체동산<br>(귀금속, 미술품 등) | 조선백자 시가: 2,000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타<br>(현금 등)         | 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■ 소극재산

□ 채무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     모름

| 채무 종류   | 채권자<br>(채권자명, 은행 등) | 채무액      | 비고(기간, 사유 등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담보대출    | 00은행                | 1억 원     |              |
| 보증금반환채무 | 김00                 | 1,000만 원 |              |
| 기타채무    | 송00                 | 2,000만 원 | 개인채무         |

■ 순재산합계

279,700,900 원

## ■ 수입 및 지출 내역

□ 수입:  아래와 같이 있음     없음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근로수입   | 월 100만 원   |
| 임대수입   | 부동산소재지: 서울 강남대로 193번지, 월 100만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수입   | 해당 사항 없음   |
| 이자수입   | △△예금, 월 15만 원  |
| 연금     | 국민연금(유족연금)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, 기초노령연금, 장애인연금 등<br>기초노령연금 월 25만 원 |
| 보험     | 개인연금보험, 산재보험 등<br>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회보장급여 | 기초생활수급(주거급여 및 생계급여), 장애인 연금, 장애 수당 등<br>해당 사항 없음           |
| 기타     | 해당 사항 없음   |

후견개시여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 있다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  
예: 보험금(진단금 및 기타 의료실비), 산재보험금, 손해보상금 및 합의금 등 수령 예정 금액

진단금 수령예정: ○○생명 2천만 원

## □ 지출목록

|         |  |
|---------|--|
| 정기적 지출  | 간병인 급여 월 250만 원, 기타 월 70만 원(식대 50만 원, 생필품 20만 원) |
| 비정기적 지출 | 진료비 등  |

## □ 순수입액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입-지출 | 240만 원 - 320만 원 = -80만 원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